



2022년

이해충돌상황 대응 사례집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CONTENTS

2022년도 이해충돌상황 대응 사례집

I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1.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신고·회피 의무	1
2. 공기업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이해충돌 발생 여부	2
3. 공직자 채용 전 2년 이내 근무하였던 단체 범위	3
4. 공직자 가족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신고 범위	4
5. 퇴직한 기관장을 학술대회 강연자로 초빙하는 경우	5
6. 봉사활동 프로그램 책임자 자녀 봉사시간 허위 입력 ·	6
7. 혈액공급 담당자 친인척 병원의 사적이해관계 여부	7
8. 가족이 운전면허 시험관으로 배정	8
9. 배우자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9

II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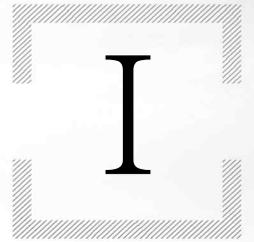
10. 공기업, 출자회사 직원 간 부동산 거래의 이해충돌 여부	10
11. 금전 차용 이후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11
1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 신고	12
13.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신고	13

III 수의계약 체결 제한

14. 퇴직자로 구성된 단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14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계약담당공직자 해당 여부	15
16.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
17.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17

IV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이용, 수익금지

18. 국립공원 야영장 사적이용	18
19. 관용차량을 동호회 야유회를 위해 사용	19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

[01]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신고·회피 의무

기관명	강원대학교병원
유 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병원 직원 A가 직원 채용 전형에서 면접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를 진행하는 중, 지원자로 배우자의 동생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세부내용

질문자를 'A'(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 가정했을 때, 병원 직원 A의 배우자 B의 동생 C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A는 동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A와 C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동생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 A는 C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 A와 C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C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공기업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이해충돌 발생 여부

기관명	(주)강원랜드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B업체와 계약체결 및 용역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호텔콘도지원팀 직원 A의 여동생 C가 B업체에 근무하면서 용역산출 및 지급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A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 의무가 발생하나요?</p>
세부내용	<p>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p> <p>직원 A의 업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심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고, B업체는 직원 A의 직무관련자입니다. 그러나 여동생 C가 B업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는 한, B업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따라서 직원 A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03]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 2년 이내 근무하였던 법인·단체 범위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직원A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법인 OO종합병원 근무 이력을 가지고, 2012년 1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심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 입사 전 재직하였던 OO종합병원과 직무관련자가 성립되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발생할까요?

세부내용

10년 전에 우리원에 입사하였더라도 입사 전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과 '사적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의무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사 전(2년 이내) 직원 A가 근무했던 법인이 OO종합병원이고, 현재 OO종합병원을 심사(16가지 직무)한다면 OO병원은 '직무관련자'이고 직원 A와 '사적이해관계자'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OO병원이 직무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거나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사년도가 과거 10년 전이라도 입사(채용)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와는 '사적이해관계'가 성립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10년 전에 입사한 직원도 입사 전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직무관련자가 해당이 되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 A가 수행 하는 업무가 16가지 신고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우리원 입사가 10년 전이라 하더라도 입사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현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될 경우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

직원 A에 대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조치로 해당부서에서는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수행업무절차 및 업무분장 상 정·부 지정, 담당 팀장 공동수행 여부 등
- 이해충돌발생 가능성 제어 수단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04] 공직자 가족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신고 범위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직원 A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요양기관에 인척이 봉직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가 성립하여 회피·기피 신청 대상일까요?

세부내용

직원A가 수행하는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 있는 요양기관에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근무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대상 요양기관에 인척 직원이 근무하는 것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인척의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법 제779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해석 관련 판례를 보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직무관련 대상 요양기관에 인척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조치 결과

직원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봉직의로 재직중이기 때문에 신고의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요양기관 임원은 아니더라도 봉직의사가 사적이해관계자 가족의 범위 해당되면서 직원A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05] 퇴직한 기관장을 학술대회 강연자로 초빙하는 경우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기관장을 기관 업무 관련한 학술대회에 강연자로 의뢰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부내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회피하여야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과장·국장·실장(이에 상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으로서 법령·기준에 따라 직무 수행 공직자를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 사목,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한 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에는, 그 기관장의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모든 직원과 퇴직한 기관장 사이에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학술대회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추가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하는 모든 직원들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치 결과

해당 학술대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실무자부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하는 모든 인원들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음

[06] 봉사활동 프로그램 책임자 자녀 봉사시간 허위 입력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유 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사 ○○지사 ○○○팀에 근무하는 직원 A의 자녀가 ○○지사에서 개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팀에 근무하는 직원 A가 직접 본인 자녀의 봉사시간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였을 때, A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부내용

공직유관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마목), 공직유관 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의거 ○○○○○사 ○○지사 ○○○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입니다.

○○○○○사의 ○○지사 ○○○팀 직원인 A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에 의거 본인의 자녀가 본인이 주관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우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외부봉사활동 관련 특기사항이 대학입시에 평가하는 항목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봉사 활동 시간으로 행사를 주최한 기관에서 포상 등을 할 수 있기에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만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자녀는 사적이해 관계자이므로 직원 A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 결과

A직원은 신고 의무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미실시하였고,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본인 자녀의 봉사시간을 허위로 입력, 승인하였기에 직원운영규정,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징계」조치

[07] 혈액공급 담당자 친인척 근무병원 사적이해관계 신고 여부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혈액원 공급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B는 관내 병원에 혈액을 공급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며, 직원 B의 처제 C는 ○○○혈액원 관내 K대학병원의 혈액은행 담당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B는 C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세부내용

공직유관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마목), 공직유관 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의거 ○○○혈액원 공급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입니다.

○○○혈액원 공급팀 직원인 B는 관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공급하며 K대학병원 혈액은행 담당 자로서 C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우 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C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제6호가목에 따라 B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사적 이해관계로 직원 B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08] 가족이 운전면허 시험관으로 배정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유 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시험관 A는 도로주행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중 남동생이 본인에게 배정된 것을 알았지만 별도의 신고 조치 없이 시험을 진행하여 합격한 경우는?(합격 후 14일 경과)

세부내용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공직유관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마목), 공직유관 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시험관 A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입니다. 남동생은 직무관련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 사적이해관계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됩니다.

남동생은 공직자인 시험관 A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어 제척, 기피, 회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시험)을 진행한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09] 배우자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기관명	대한석탄공사
유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광업소에서 외주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차년도 외주용역 계약심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①항 9호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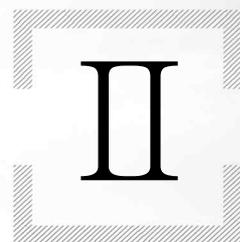
답변내용

소속 직원의 현재 상황을 보면 해당 직무 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률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이하 생략〉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10] 공기업, 출자회사 직원 간 부동산 거래의 이해충돌 여부

기관명	(주)강원랜드
유형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공기업 ○○사가 100% 출자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사 직원 B와 출자회사 관리부서인 ○○사 투자관리팀 팀장 A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였을 때, A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p>	
세부내용	
<p>공직유관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마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바(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 ○○사가 100% 출자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사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입니다.</p> <p>○○사의 투자관리팀 팀장(직원)이 ○○사 직원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사 직원이 ○○사 팀장(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p> <p>투자관리팀 팀장(직원)의 구체적 직무 범위, 역할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는 ○○사가 100% 출자한 기업이어서 ○○사 투자관리팀이 ○○사를 관리·감독하고 ○○사 팀장(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 직원이 ○○사 팀장(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 지위에 있어, ○○사 팀장(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p>	

[11] 금전 차용 이후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유 형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사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단직원 A씨는 지사 관내 사업장 대표자인 동창 B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발령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대상인가요?

세부내용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 관계 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예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또한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변제 등으로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시중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는 유효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 신고

기관명	한국관광공사
유형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공사 직원 A는 이사하면서 부족한 계약 잔금 1천만원을 동창 B에게 빌렸고, 현재는 상환완료까지 두 달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 소속부서를 ○○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 업무는 ○○인증업무로, 해당 인증사업에는 2주 전 B가 신청서를 제출해 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B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요?

세부내용

차용한 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환중이라면 두 사람의 거래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용 금액을 상환하는 도중에 두 사람 간 직무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

질문> 과거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와 금전거래를 체결하였으나, 얼마 후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때, 그 금전거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과거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체결한 금전거래이며,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성립된 시점이 상환완료 등을 통해 금전거래가 소멸한 이후라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성립된 시점이 아직 해당 금전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때라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관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신고

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형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보수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사업체 2곳의 대표와 각각 구두로 사전협의 하에 100만원의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직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사항은 논하지 않음)

세부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항에 따라 노후주택 보수개선을 담당하는 'A' 직원이 공사업체 'B'대표 및 'C'대표와 금전을 차용한 것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예외사유인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위반 사실을 발견한 소속기관장은 'A'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동법 제21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원 'A'는 공사업체 'B'와 'C'대표와의 금전거래 행위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동법 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동법 제28조)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4] 퇴직자로 구성된 단체와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유형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공원협회, ○○공원협회는 국립공원공단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주로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사적이해관계자(2년 이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행위 발생</p>
세부내용	<p>△△공원협회, ○○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대표자가 국립공원공단 임직원(법 제12조에 따른 해당자)일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수의계약이 불가능 함. 또한, 계약과 관련된 자(해당 과업의 결재선 상에 있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2년 이내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일 경우 역시 공단과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또한, 경쟁 입찰을 했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능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물품 구매 포함)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용역수행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2년 이내 퇴직자)에도 협회의 대표자 또는 계약과 관련된 자가 법 <p>제12조에 따른 해당자가 아닐 경우</p> <p>예) 내가 계약담당자이고, 배우자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할 경우, 관용차 구입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현대자동차 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음</p> <p>※ 협회 내에 사적이해관계자가 근무한다고 하여서, 협회 자체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p> <p>※ 추가적으로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준수</p>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계약담당공직자 해당 여부

기관명	강원대학교
유형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에 보면, 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아니나, 업무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을 위해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 시에만 징구하도록 하는 바, 이 때 계약담당공직자에 단과대학 및 각 부서의 담당 직원이 포함되는지?</p>
세부내용	<p>질문에 대한 답변</p> <p>답변)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뜻하고 「강원대학교 위임전결규정」 및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분임 재무관 회계관직을 부여받은 공직자(결재권자 및 실무자)는 계약담당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단과대학 및 각 부서의 계약 담당 직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16] 사적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형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의약품 공급업체 이사의 딸이 공단 계약담당자입니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공단과 계약(수의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p>
세부내용	<p>질문자를 'A'라 가정 했을 때, 의약품 공급업체 'A'이사의 딸인 공단 직원'B'는'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A'이사는 공단에 기피신청을 하고 계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 이사장은 직원 'B'를 해당 의약품 계약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 'B'가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p> <p>질문에 대한 답변</p> <p>질문> 의약품 공급업체는 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원'B'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공단 이사장이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B'도 상황을 알고 있다면 공단에 의무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p>

[17]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기관명	대한석탄공사
유형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부내용

소속 공직자와의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 것이기에, 해당 직원이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에 해당되면 수의계약 체결(수의계약 확인서 첨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5.~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이용, 수익금지

[18] 국립공원 야영장 사적이용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유형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이용, 수익금지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 사이트 중 예비영지(중복예약, 시설보수 시 사이트 변경을 위한 비상용 예비영지)를 지인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함

세부내용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국 14개 사무소에서 41개소 야영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립공원야영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의시설이 우수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더불어, 야영장 사이트 중 65개 영지를 예비영지*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예비영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워두거나 야영장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예비영지: 예약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예약, 전기시설 고장으로 인한 사이트 변경 등 비상시 활용을 위한 예비영지

2021년 7월 ○○○야영장에서 직원 A가 당직근무 중이었음. 인근을 여행 중인 A의 친구 B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 A에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A는 예비영지를 B에게 임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줌, B의 예비영지 사용행위를 이상하게 여긴 야영객이 공익신고하여 감사실에서 조사 및 처리한 사건

조치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A직원 징계처분(2021년 당시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19] 관용차량을 동호회 야유회를 위해 사용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유형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이용, 수익 금지
구분	<input type="checkbox"/> 실제 사례 <input type="checkbox"/> 상담 사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시 사례
사건(상담)개요	<p>○○교통방송 방송지원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B는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동호회 야유회를 위해 업무용 차량을 10회 사용한 경우는?</p>
세부내용	<p>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p> <p>직원 B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고, 업무용 차량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용물품(차량)입니다</p> <p>따라서 직원 B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동호회 야유회 운영)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한 것임</p>

